

«2002년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시행에 앞서 - 새로운 새터 문화의 형성을 위해»

1. 성폭력? 새터 반성폭력 내규?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의의

새내기 새로 배움터(이하 새터)는 신입생들이 대학문화를 처음으로 접하고, 대학생활을 함께 만들어나갈 동기들과 선배들을 만나게 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터는 새내기들의 4년간 대학생활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새터에서 새내기들은 '성폭력'을 가장 먼저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 처음 만나는 선배와 후배의 어색함과 남학우와 여학우의 어색함(남고와 여고가 아직도 많은 실정에서)을 없애고 서로 빨리 '친해져야 한다'는 명분 아래 성폭력이 쉽게 발생하고 있다. 서로를 알고 친해지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술자리나 게임들이 이미 남성중심적이고 성폭력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이 단지 물리적 강제를 사용한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대학이라는 공간이 이 사회와 결코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기에 이 사회의 남성중심적인 문화는 대학이라는 공간에서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일차적으로는 자신의 불쾌감과 피해를 드러낼 수 없는(처음부터 '찍히면' 대학생활을 어떻게 하지,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일까...) 새내기들이 내규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문제제기가 보다 용이하게 할에 있으며 나아가 성폭력에 대해서 모두가 인식하고, 여학우를 배제시키고 소외시키는 문화·남성중심적이고 성폭력적인을 함께 바꾸어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단순히 강간이나 추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이란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언어적 성폭력과 환경적인 성폭력(자세한 설명은 내규 참조)도 포함된다. 또한 성희롱·성추행·강간미수·강간과도 같은 남성성기 중심의 도식적인 성폭력의 구분은 피해자에게는 무의미하다. 즉 강간은 매우 나쁜 범죄이고 언어적 성폭력은 가벼운 일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성폭력의 판단기준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있다. 현실적으로 여성이 자신의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가 힘들며,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고 하여도 남성들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성폭력은 발생하기 쉽다. 거부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해서(사실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동의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런 의도가 없는 가벼운 신체접촉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 성폭력을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성폭력은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성폭력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면 '파렴치한' 가해자와 거기에 재수 없게 걸린 '피해자'로 단순히 치환되어 버린다. 성폭력은 우리 일상의 성폭력적인 문화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새터 때 발생하는 성폭력은 우리의 놀이문화, 술자리 문화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해자의 도덕성만을 비난하면서 쉽게 자기 자신을 가해자와 분리시켜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을 잊지 말고 잘못된 성문화를 바꾸기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중심주의의 원칙을 잊지 말아야한다. 피해자중심주의란 성폭력이나 아니냐의 기준을 피해자의 주관에 따르는 것이다. 나아가 사건 해결의 전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성폭력 사건의 많은 경우가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남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경험과 느낌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피해자중심주의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물음은 '피해자가 제멋대로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너무 주관적이다, 기준이 애

때 모호하다'와 같은 이야기이다. 하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성폭력 피해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여자가 먼저 유혹한 것 아니냐, 지나치게 민감하게 그러는 것 아니냐' 등의 비난과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피해자의 생활이 쉽게 이야기되는 상황을 겪게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자신의 피해사실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성폭력의 처리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야 한다.

※ 새터 반성폭력 내규

* 이 내규의 적용 시기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OT기간부터 각 단대의 신입생 수련회가 모두 끝날 때까지로 한다.

1. 목적

새터는 신입생이 가장 먼저 접하는 대학 문화이며, 이를 통해 대학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는 새터임에도, 여학우는 물론이고 남학우들도 음란 가요 등으로 대변되는 집단적 성폭력과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에 무방비한 채로 노출되었다. 진보적인 공간이라 여겨지는 대학에서의 이러한 성문화는 신입생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 방법들은 소극적이고 미비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비판, 근절시키기 위해 객관적인 것대로서 내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내규는 결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단죄를 넘어서 왜곡되고 비뚤어진 공동체 성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성폭력을 예방함으로써 학생회 첫 사업인 새터에서 바람직한 대학문화를 보여주는 것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전 교양이나 내규의 여문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성의식(혹은 성문화)을 지적해내고 올바른 성문화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동의하지 않은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뜻한다.

1) 집단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집단 내 집단인 경우, 혹은 집단 내 개인의 경우

① 집단적으로 어느 한 성을 비하하는 발언(언어폭력)을 하거나 성행위, 성기 등을 흉내내는 경우

예1) 조별로 촌극이나 장기자랑을 할 때

- 96년 새터에서 모단대에서는 장기자랑 시간에 남학생들이 성기 모양으로 스크린을 판 후, 맨 앞의 남학생이 암바사를 들고 있었다. 여학생이 암바사를 톡톡치며 그 당시 유행하던 광고 멘트를 말하자 앞의 남학생은 암바사를 내뱉으며 사정하는 것을 흉내내었다.

- 99년 새터에서 모단대의 조별 촌극 시간에 '학교에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남녀가 물을 꺼놓고 '오빠, 힘들어요', '조금만 참아' 등의 성행위를 암시하는 말과 신음소리로 표현했다.

예2) 98년도 응원 오리엔테이션 때 아가라가 응원단 중 여학우가 빨간 옷을 입고 있자 고대를 상징한다며 '벗어라'고 외침

② 새터 행사에서 사회자가 어느 한 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

③ 공동의 공간에서 음란물, 사진 등을 부착하는 행위

예) 새터에서 방이름을 정하고 그 게시물을 꾸밀 때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④ 술을 마실 때 언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예) 억지로 술을 먹이거나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경우, 또는 성적인 농담이나 응답패설로 한 성을 임의로 배제시키려는 경우

⑤ 소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성행위를 몸짓 혹은 소리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예) '첫날밤에' 등의 게임

⑥ 음란 가요를 부르는 경우

예) 정력가, 젖소부인 엘리제

2)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

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까이에 앉게 하여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행위

② 신체적인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신체의 일부를 고의적으로 접촉
- 원치 않는에도 신체 일부를 애무하거나 문지르는 행위(입맞춤, 포옹)
-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암시, 요구하는 행위
- 손으로 성행위 등을 나타내는 몸짓을 하는 경우
- 기타 접촉, 성관계를 강요하는 일체의 물리적 혹은 신체적 행위

예) 98년 새터에서 모단대에서는 신입생 남학생이 동기 여학우가 술에 취해 잘 때 옆에 누워 옷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한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③ 언어 폭력을 하는 경우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의 성적 활동, 성감각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성적으로 모욕하는 호칭의 사용
- 불쾌한 성적 농담(농담의 내용이 왜곡된 성의식을 담고 있거나, 강간 등을 주제로 하는 농담)
- 기타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끼거나 인격의 손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표현이 잠재된 언사

④ 적대적 환경 조성

- 음란하고 징그러운 눈빛, 결눈질하거나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
- 음란한 쪽지, 편지를 보내는 행위
- 상대방이 위협적으로 느낄 상황을 조성

예) 벽으로 몰아붙여 팔에 가둔다거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

- 화장실을 엿보거나 침입,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써놓는 경우

3. 의무

새터에 참여한 구성원은 새터 때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모든 구성원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대상

새터에 참가한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5. 신고와 신고기구

피해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상황을 공감하는 제3자가 과(반)학생회, 단대학생회, 총여학생회, 신고함에 신고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의지와 그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신고인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 사건의 신고는 직접 방문, 전화, 서면 등 가능한 방법으로 신고한다. 신고기간은 새터 기간만이 아니라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신고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신심의 후유증을 덜고 신고를 결심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므로 시효 규정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6. 피해자의 보호

대부분의 성폭력이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고 범죄 피해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주장으로 인하여 받게되는 또 다른 범주의 사회적 불이익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용모, 소속, 기타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기 힘들어하는 경우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7. 동조자의 처벌

성폭력 대책위는 성폭력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할 때에는 그 동조자에 대하여 가해자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단, 이때의 동조자는 새터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다.

8.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 1) 각급 학생회는 과(반)내에서 집단적 혹은 개인적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 논의 테이블을 제안해야 한다.
- 2) 신고함에 제보자가 들어오거나 총여에 제보가 들어오면 총여학생회가 제보자가 되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 논의 테이블을 제안해야 한다.
- 3) 내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폭력 사건을 사건 대책위원회의 논의 테이블로 가져와야 한다.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 대책위의 논의테이블로 가져오지 않는다.

9.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 1) 새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이 일어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소속된 단대 학생회(단대를 대표할 수 있는 1인) 혹은 동아리 연합회, 과반 학생회(과반을 대표할 수 있는 1인) 혹은 동아리 대표자, 총여학생회(총여를 대표하는 1인), 총학생회(총학을 대표하는 1인)가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사건이 접수된 이후 바로 구성되어야 한다.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의 소속이 다를 경우 쌍방의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각각의 1인(가해자 소속, 피해자 소속)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온다. 또 과반학생회가 없을 경우 단대 1인 혹은 동아리연합회 1인만 들어온다.(최소3인, 최대6인)

- 2)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집행부를 둘 수 있다. 집행부의 구성은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집행부는 대책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 3)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가해자 및 동조자의 처벌을 강제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4)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및 사후처리
 - 가해자와 동조자의 징계 및 재교육
 - 피해자의 보상과 치료
 -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5)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중 사건을 누설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위원직을 박탈한다.
- 6) 집단적 혹은 개인적 성폭력 사건 해결 방안의 원칙
 - ① 성폭력 사건 대책위의 논의 테이블로 가져와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징계에 대해서 논의한다.
 - ② 공식적인 설명사과(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혹은 공동체 구성원 전지를 대상으로)를 받아내야 하고 그것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다.
 과반장, 단대장의 차원에서 사건을 은폐시키려 한 경우 그에 대한 사과 대자보를 붙여야 한다.
 - ③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사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
 - ④ 성폭력 사건 대책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처벌을 가해자 및 동조자에게 가한다.

10. 징계내용

가해자 및 동조자에 대한 징계는 성폭력 사건 대책위에서 내린다. 가해자 및 동조자에 대한 징계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 가해자 및 동조자들을 대상으로 왜곡된 성문화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세미나
-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자신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명시한 사과대자보
- 성폭력이나 성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재교육
- 성폭력 상담소 등의 외부단체에서 일정기간 봉사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일정기간 가해자 접근 금지

11. 개정

개정 안전의 상징과 외결은 확대운영위원회의 회칙에 따른다.

*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는 2000년 2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II. 2000년, 2001년... 그리고 2002년

새터내규의 제정과 시행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잘 알려졌듯이 2000년도에 제정이 되었다. 당시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되기 이전의 상황 속에서, 처벌이 중심이 되는 학칙과는 달리 보다 근본적으로 대학 내에서 성폭력 사건의 발생을 조장하는 문화적 토양 자체를 바꾸어내고 사전에 이를 방지해낼 수 있도록 하는 자치규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고,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새터 반성폭력 내규가 제정되었다.

학생사회 내부적으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폭력 담론의 형성과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학생 사회 내부의 자치적인 해결에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학생사회 스스로가 자신들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나간다는 점에서 학생 자치권을 구현해나가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터내규가 제정이 되고 시행되어온 근 2년 간을 돌아보면,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커다란 변화들이 있어왔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제정과 안착화의 시간을 거쳐 안정기에 돌입했지만,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을 '규제'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식의 반응, 이러이러한 것들이 내규에 위반이니 조심하라는 식의 회화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몇 년 전과 지금의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어떤 식으로 개개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던 간에, 새터 자리에서 성폭력적 상황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을 자체적으로 조심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성폭력 사건의 발생자체를 사전에 막아낸다는 내규의 근본적인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행 몇 년을 거치면서 새터내규의 존재 자체가 학생 사회 내부의 인식 속에 점차 자리 잡아가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는 성폭력에 대한 체감정도가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코 연세 사회 내부의 성폭력에 대한 자체적인 문제의식들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터내규 시행 3년 차에 들어선 올해에는 새터내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점차 당위적으로 성폭력의 문제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당장의 소소한 예방들에 가능성을 부여하기에는 현실은 너무나도 더디게 변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회보해버릴 가능성 역시 농후하기 때문이다. 2002년 새로운 새터 내규의 시행이 필요한 때이다.

2002년 - 여학우들에게 친화적인 새터문화 만들기

이제까지 새터 내규를 시행하고 전달 할 때에 있어서 - 특히 새내기들에게 - 어려운 지점으로 작용해왔던 것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그 의미를 설명하느냐 일 것이다. 성폭력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나 합의 수준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성폭력의 예방이라는 것에 강조점이 찍혀 있는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성폭력의 예방이라는 목적 아래에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학 내의 문화 특히 이제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학우들을 배제시키고 불편하게 만들어내는 새터의 문화 자체를 바꾸어내 보자는 문제의식이 깔려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2002년 올해 새터내규 시행에 있어서는, 여학우들에게 친화적인 새터문화를 만드는 것을 주제로 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어떻게 단위 내에서의 성폭력을 예방하느냐의 문제를 전적으로 고민한다면, 대학문화를 가장 처음으로 접하고 그때의 기억을 대학 생활 내내 안고 갈 새내기들에게 새로운 환경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이미 대학생활의 경험들을 쌓아나가고 있는 선배들의 입장에서 더욱더 당연히 취해야만 하는 노력일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폭력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새터 반성폭력 내규 제정의 의의이며 근본적인 목표이다. 그리고 시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올해의 목표로는, 여학우들을 배제하지 않는 프로그램, 특히 이제까지 여학우들에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었던 놀이들을 바꾸어내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놀이의 방안들을 생각해보는 것이 있을 것이다. 대학의 문턱을 들어서자마자 경험하게 되는 통과 의례로서의 놀이라는 명목 하에 자행되는 수많은 성 차별적, 성폭력적 상황들과 선후배간의 위계질서의 확인은 그것이 내재화되는 순간 끊어낼 수 없는 악순환을 더욱더 공고히 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하느냐는 질문만으로 현실을 넘길 수는 없다.

III. 새터 내규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공감하고 고민을 깊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 예시

1. 새터 내규, 이렇게 전달해보자!

새터 판성목력 내규를 각 단위마다 알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따라 내규에 대한 인지 수준이나 편견을 달라지게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 새터 내규에 대해 “지키라고 하니 까 지키는 거지”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과, 새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적 상황들을 미리 예방하여 보다 즐거운 새터를 만들고 대학내에서 진정 남녀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합의한 자치규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해된다. 특히나 새내기들이 내규에 대해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배들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

또한 새터에는 후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학번 선배들도 많이 오는 만큼 선배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내규 담당자가 후배들에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자신보다 고학번 선배에게 내규를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또 그것이 본래 의도대로 받아들여지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고학번 선배들, 복학생들 역시 연세의 일원으로 공동체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데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후배가 될지라도 선배에게 내규를 지켜줄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또한 선배는 후배가 잘못을 지적한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이 미처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 후배의 이야기라 할 지라도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로 받아들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후배가 선배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내규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미리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도록 내가 선배일 경우 이렇게 말하겠다, 내가 후배일 경우 이렇게 말하겠다는 예시문을 만들어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해보라고 알려주는 것이 어떨까.

2. 놀이 문화 되짚어 보기

새터에서 많이 하는 놀이들을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 본다. 주로 몸을 많이 쓰는 놀이들이 많고, 해마다 크게 바뀌지 않고 반복되는 놀이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놀이들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어떤 점이 새터에 적합하고 좋아서 계속 하는 것인지 고민 없이 진행해 오지는 않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 새터 내규의 시행의 목적이 내안적 새터 문화 만들기과 맞닿아 있는 만큼 우리의 놀이 문화 환경이 그다지 풍성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모든 학우들이 즐거울 수 있는 놀이를 만들어야 하겠다.

여학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놀이 아이템을 개발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제까지 많은 놀이들이 남학우 중심이어서 여학우들은 한 두명 끼이거나 구경만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새터가 다같이 즐기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만큼 여학우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놀이 아이템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굳이 몸으로 싸우거나 힘자랑을 하는 게임이 아니더라도 성원들끼리 친해지고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야 하겠다.

예시> 여왕별 놀이 / 김밥말이 / FM

3. 내규에 대해 가지는 몇 가지 오해

남성을 잠정적 가해자로 보는 것이다

작년 내규 시행에 대한 평가에서, “망에 붙여 놓으니 거부감이 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심지어는 술에 취해서 붙여 있는 내규 세칙을 떼어버리려는 선배가 있었는데, 이러한 행동은 내규 자체에 대해 ‘남성을 잠정적 가해자로 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것에 기반 한 것이다. 하지만 분명하게, 내규는 어떤 특정한 성을 잠정적 가해자로 놓고 단죄하지는 것이 아니라, 성원 스스로가 합의하고 약속한 자치 규약을 통해 남성과 여성 어느 한 성이 다른 성에 의해 불편하거나 피해 당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체 내의 성차별적 문화를 없애나가자는 긍정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말 안하고 있으면 본전은 한다

요즘 성폭력 문제가 여기저기서 떠오르고 대학 내에서 성폭력에 관한 담론이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이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을 하는 것인 양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 하지만 의문점이 있거나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통해 풀고 가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것이 무서워 완전히 합의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내규나 성폭력 개념에 대해 모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제대로 합의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없고 설득할 수도 없으며, 언제나 성폭력 담론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위치에만 있게 된다. 그렇다면 내규를 같이 고민하거나 문제의식을 키워 가는 등으로 수위를 높이는 작업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내규가 같이 약속하고 또 앞으로 같이 만들어 가는 것임에 동의한다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내규를 고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말 안하고 있으면 본전을 깎아 먹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피해자의 상황 이해하기 → 주변인으로서 피해자 도와주기

1. 성폭력적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불편함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 1) 흥겹게 놀아야 하는 분위기를 자신이 망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 2) 성폭력은 대부분 친한 친구나 선후배 사이에서 발생하는데 친한 친구나 선후배 사이가 어색해질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 3) 새내기가 선배에게 성폭력을 경험했을 경우 새터 시기 처음 만난 선배에게 문제제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 새터 때 새내기들의 대부분은 선배를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한다.

2. 성폭력 피해자는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기도 한다. '혹시 내 옷차림이나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한 것이 아닐까', '왜 그 때 싫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등.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일뿐이다. 성폭력이 일어난 탓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은 가해자의 가해 행위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성폭력이 피해자의 탓이 절대 아님을 환기시켜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피해자를 비난하기 보다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3. 성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가해자를 멀리하고 싶어하고 사건을 다시 떠올리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 위와 같은 상황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선배나 동기가 사건을 알게 되고 피해자가 사건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고, 피해자를 다그치지 않아야 한다. 사건의 당사자이자 사건을 성폭력으로 인지하고 판단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피해자이다. '그런 일은 별 거 아니지 않아?', '뭘 신고까지 하니?' 등의 이야기는 피해자의 경험을 무시하는 발언이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을 수 있게 해야 한다.

5. 사건이 신고되면 무엇보다도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를 신뢰한다는 느낌을 줘야 한다.

6.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경험을 이해하며 들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피해자가 상처를 극복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가능한 선택지들을 이야기해준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 교양을 위한 프로그램 예시

1. 최소한 OT기간과 수련회 초반에 새터 반성폭력 내규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의미를 공유하는 자리를 따로 마련하기 어렵다면 OT와 수련회 첫날 단대 학우들이 다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간단한 소개 정도는 반드시 해야 한다. 이때 주로 말해야 할 것은 새터 반성폭력 내규가 있다는 것,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의미, 성폭력 사건의 신고통로 등이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가 우리들 스스로 지켜야 할 자치규약이며 예방을 주목적으로 함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새터 기간을 보내자는 당부의 말 정도를 해 주는 것도 좋다.

2. 각자의 성폭력에 대한 생각 알아보기

- 비교적 규모가 작은 자리에서 교양프로그램의 도입부에 하면 좋은 아이টেম이다. 우선 종이를 나눠주고 '성폭력 하면 떠오르는 것' 혹은 '무엇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쓰도록 한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섞은 후 하나씩 뽑도록 하고 뽑은 것을 읽도록 한다. 그 후에는 읽은 것을 쓴 사람이 왜 그렇게 썼는지 들어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해 각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3. 직·간접적인 성폭력의 경험 나누기와 그 대처방안 이야기해보기

- 자신이 겪은 성폭력적인 경험이나 성폭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목격한 것이나 매체 등에서 접한 것), 주위 사람들이 겪은 성폭력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본다. 이 때 구성원들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일어난 성폭력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 공동체의 성문화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성폭력의 경험을 나눈 뒤에는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당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해 본다.

4. 새터 반성폭력 내규 재구성해보기

-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교양이 이루어진 뒤에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새내기들보다는 선배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사정에 맞게 재구성해 보는 것이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가 여러 조항으로 구성된 법조문과 같은 형식을 띄고 있다면 이 때 만들게 되는 자치규약은 '이러한 것은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합시다' 와 같은 형식의 10개 이내의 항목으로 구성하면 될 것이다. 자신들이 지켜야 할 자치규약을 스스로 고민하고 만들어본다는 의의를 살리려면 공동체 구성원들의 경험으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새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과 실제로 사건이 신고되었을 때

1. 성폭력적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이 있을 때 학생회장, 집행부, 선배 기획단들이 그때마다 주의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단, 그것이 강제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그 상황이 왜 성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2. 새터 시기 성폭력을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과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새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인지시켜야 한다.

예) “어디어디에 신고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반 학생회장이나 XX대 주체 이 분에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000호로 오시면 됩니다.” 등

3. 성폭력 사건이 신고됐을 경우 최대한 친분이 있는 동성의 선배나 동기로부터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때 성폭력 사건이 신고된 경우라는 것은 꼭 공식적인 통로를 통한 신고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4. 새터 시기 성폭력 사건은 신고함이나 단대 학생회로 신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주로 친한 선배나 친한 동기를 통해 사건이 알려지고 과반 학생회 정도가 사건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단대 학생회까지 사건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과반 학생회에서 사건을 ‘잘’ 처리해야 한다. 이런 경우 과반 학생회에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않도록 과반 학생회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든지 사건을 해결하기로 맡은 사람 이외에는 피해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최선이며, 대책위원회가 꾸려지더라도 피해자의 신원은 절대적으로 보호되고, 그렇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 안심시킬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혹은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 사이 관계가 친밀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조용히 넘어가자’ 류(類)의 말로 사건을 덮어두자고 하는 것은 금물! 그런 식의 해결은 해결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이후에 또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조장하는 것일 뿐이다.

5. 사건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해결하는 순서

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일반적으로 ‘XX 비상대책위원회(준)’-을 꾸린다. 주로 학생회가 될 수 있겠지만, 학생회 집행부가 모두 참여하는 것보다는 담당하는 주체 한 명과(피해자와 가해자의 소속이 다르다면 각 소속 학생회에서 각각 한 사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 정도로 꾸리는 것이 좋다. 이 때 가해자가 속한 학생회에서 대책위에 참여하는 것은 가해자를 두둔하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속한 공동체로서 책임을 사건 해결에서 그 후속작업까지 책임을 지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다.

① 피해자에게 대책위가 어떤 어떤 구성원으로 꾸려지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지 충분히 설명해준다. 언제든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② 피해자의 진술서를 받는다. 비대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참고인 진술을 받거나, 피해자의 보충 진술을 받을 수도 있다.

③ 가해자의 진술서를 받는다.

④ 사실 확인을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 면담을 할 수 있으며 면담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면 좋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기록을 분명히 남기기 위해 녹음을 하는 것임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서면으로 확인 서명을 받아놓는 것도 좋다.

⑤ 사실 확인이 되면 비대위에서는 사건 규정을 내린다. 예를 들어, 이 사건의 경과는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성폭력이라고 규정한다. 사건 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비상대책위원회(준)이 ‘비

상대책위원회'가 된다.

⑥ 피해자에게서 가해자에 대한 요구안을 받는다. 그리고 비대의 내부에서 요구안이 알맞은지 검토한다.

⑦ 요구안을 가해자에게 전달한다.

⑧ 가해자가 요구사항을 하는지 비대위는 책임 있게 확인한다.

※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총여학생회에 연락을 할 수 있다.

6. 한편 과/반학생회 내에서 일어난 성폭력의 경우 사실 그 피해자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기는 쉽지 않다. 그런 경우라도 학우들과 함께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생각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 그런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의 가해가 이루어지기 쉽다. 2차, 3차 가해가 이루어진다면 그것 역시 성폭력 사건으로 신고 가능하다.

사건이 해결이 된 이후 사건 해결 과정을 그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것이 기본(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폭력에 대한 토론회나 간단한 세미나, 관련 영상물 보기 등을 통해 공동체 내, 성원들과 함께 성폭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이후의 성폭력도 예방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 여기서 잠깐! → 2차, 3차 성폭력이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후, 다른 사람에 의해서 혹은 가해자에 의해서 다시 피해자에게 이루어지는 폭력을 가리킨다. 피해자에게 사건을 조용히 잊으라고 강요한다거나, 사건을 공식적으로 해결할 경우 혹은 신고할 경우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언사는 모두 2, 3차 성폭력으로 볼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 '그걸 가지고 성폭력이라고 하다니, 이상한 애다.' 등의 언사 역시 그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행위들은 피해자들의 성폭력 경험을 남성중심적인 성담론에 기대어 부정하거나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이 된다. 또한 이런 언행은 이후 똑같은 성폭력 행위들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7. 과/반 학생회에서 나름대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건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처리과정을 단대 학생회로 보고하도록 하자. 그래야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대 학생회도 마찬가지다. 단대 학생회로 보고되는 사건 개요와 사건처리과정, 그리고 단대 학생회에서 직접 처리한 사건 개요와 사건처리과정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서 총여학생회에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새터내규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경험의 축적과 이후 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다.

8. 사건 해결을 할 때 피해자의 의지와 의사가 가장 우선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피해자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에게 올바른 사건의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충분히 말해줘야 하고, 최대한 사건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건을 신고하고 나서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공식적으로 대책위를 세워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공식적 해결은 공개적 해결과는 다르다)은 피

해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절대 사건을 확대하는 방법이 아니다- 사건이 묻혀지거나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다른 가해를 할 가능성을 최소로 줄이고, 뒷소문만 무성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
는 좋은 방법이다.